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39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 백종헌 · 서천호 · 박정하

정희용 • 이헌승 • 김용태

김상욱 • 박준태 • 김소희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 2조제2호의2·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 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중 "취소,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를 "취소 및"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접수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신규, 변경) 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u> <</u> 삭 제>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	
<u>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u>	
<u>장품을 말한다.</u>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	<u><삭 제></u>
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	
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 12. (생 략)	3의2. ~ 12.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	등의 금지) ①
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	<u><삭 제></u>
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	
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	

 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생략)

② (생략)

- 제14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 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품질제고를 유 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4. (현행과 같음)② (현행과 같음)<삭 제>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 준,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총리렁으로 정한 다.
- 제14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 일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인증의 표시) ① 제14 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삭 제>

<u><삭</u>_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 은 경우
- 2.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삭 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3.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

네스(그(~6 년) 추]
<u>소 및</u>	_
	-
	_
	-
	-
	-
	-
	_
	-
	-
	-
세36조(벌칙) ①	-
	-
	_
1	
1. ~ 2의2. (현행과 같음)	
<u><삭 제></u>	

증받은 자

- 2의4.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인증표시를 한 자
- 3. 4. (생략)
- ② (생략)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8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2. (생략)
 - 2의2. 제14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4조의4제1항에 따 른 인증표시를 한 자
 - 3. (생략)

<삭 제>

- 3.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______.

<삭 제>

3. (현행과 같음)